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고시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2. 3.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대상지는 배후도로 세굴 방지 및 고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파라펫 설치를 통해 침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명 및 장소

- 사업명 : 신덕동 해안도로지구 연안정비사업
-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6-2번지, 118-1번지 일원

3.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 사업규모 : 호안(파라펫 보강) L=610m
- 총사업비 : 577백만원

4.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 여수시 해양정책과 열람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061-659-2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여수 화태백야(1공구) 도로건설공사, 1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12. 19.자로 이의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5. 2. 3.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 화태-백야(1공구) 도로건설공사, 1차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 화정면 백야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4. 12. 19.)
5. 공고 기간 : 2025. 2. 3. ~ 2025. 2. 19.(16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조서 참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여수시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 061-659-4065

돌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돌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상 협의하고자 문서를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사망,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돌산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다. 사업위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11-3번지 일원
- 라. 사업기간 : 2020. 6. 25. ~ 2027. 12. 31.

2.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 2025년 2월 3일 ~ 2025년 2월 17일(15일간)
-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나. 협의장소 : 여수시 공원과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061-659-4646)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마. 협의조건

-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가 있는 경우 해지 또는 말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 후 협의 가능

바.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여수시장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법인등록번호:3612】)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신분증 , 인감도장
-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지장물(물건) 보상청구 시 구비서류 등

4. 공시송달 대상

□ 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0	돌산읍 우두리	796-71	전	20.1	20.1	피*주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 1길 13-*, 2**호(학동)			
11	돌산읍 우두리	796-72	전	90	90	정*주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서1길 7-* (관문동)			
19	돌산읍 우두리	799-57	전	836	107.2	유*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 10*동 240*호(한강로*가, 한강대우트림플월드*차)			
27-2	돌산읍 우두리	799-177	전	941	127.8	유*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 10*동 240*호(한강로*가, 한강대우트림플월드*차)			
40	돌산읍 우두리	산352	임	496	496			김*열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토지 대장상 소유자
41	돌산읍 우두리	산353	임	298	298	최*수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7*, 1**동 8**호 (미평동, **아파트)			
43-3	돌산읍 우두리	산368-14	임	1,651	1,651	정*영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3*, 1**동 8**호(웅천동, **아파트)			

□ 물건조서

연번	토지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5	돌산읍 우두리	산368-14	웬스대문	-	1	식	정*영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3*, 1**동 8**호(웅천동, **아파트)			
			동백나무 울 타 리	-	34	m					
			광 나 무 울 타 리	-	87	m					
			가이스카 향 나 무	-	16	주					
			구갑목서	-	3	주					
			영 산 홍	-	5	주					
			철 쪽	-	5	주					
			회 양 목	-	8	주					
			소나무	-	8	주					
			편백나무	-	8	주					
			광나무	-	5	주					
			측백	-	1	주					
			분묘	유연단장	1	기					
			상석	-	1	식					
			향로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 축	-	2	식								
17	돌산읍 우두리	794-45	분묘	유연단장	1	기	위*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 3**동6**호(돌산*차청솔아파트)			
			석축	자연석	2	기					

5.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망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망마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상 협의하고자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사망,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망마근린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다. 사업위치 : 여수시 시전동 672-1번지 일원
- 라. 사업기간 : 2019. 9. 26. ~ 2027. 12. 31.

2.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 2025년 2월 3일 ~ 2025년 2월 17일(15일간)
-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나. 협의장소 : 여수시 공원과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061-659-4646)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마. 협의조건

-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가 있는 경우 해지 또는 말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 후 협의 가능

바.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여수시장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법인등록번호:3612】)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신분증 , 인감도장
-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지장물(물건) 보상청구 시 구비서류 등

4. 공시송달 대상

□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번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시전동	674-2	전	257	257	등기없음		류*현		토지 대장상 소유자
2	시전동	714	묘	112	112	등기없음		이*홍		토지 대장상 소유자
4	시전동	812	전	235	23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0길 ** , 3**호 (성정동)	김*옥			
10	시전동	866	전	1,293	1,2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4-2, ***호 (대림동)	김*주			
25	시전동	산 146-1	임	17	17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366, *동***호(중앙하이츠)	최*조	김*업	여수시 소파면 관키리 ***	가압류
28	시전동	산152	임	595	59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30 삼익아파트 *동 ***호	곽*수			
29	시전동	산153	임	992	99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 1층 (신대방동)	김*운			
34	시전동	산166	임	694	694	등기없음		유*영		토지 대장상 소유자
36	시전동	산170	임	793	793	등기없음		조*숙		토지 대장상 소유자
37-1	웅천동	776-2	전	942	942	등기없음		문*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석로7길****호 (풍납동, 영남빌라)	토지 대장상 소유자
39	웅천동	776-5	임	4,059	4059* 14/5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3길 **-1(금암동)	문*원	주식회사 체*주*문*싸*부		가압류
								국*건*보*공*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 (반곡동)	압류
								서*특*시 서*구		압류
								김*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27, DMC아트포레자이 ***동 1**호	압류
								홍*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91, DMC래미안클라시스 ***동 ***호	압류

41	응천동	산24	임	694	694* 14/567		주식회사 채*주* 문*씨*부		가압류
							김*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27, DMC 아트포레자이 ***동 1**호	압류
							홍*윤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대문구 증가로 191, DMC래미안클라시스 ***동 ***호	압류
44-5	응천동	산40-3	임	1,653	1,653*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7*길 2*(고덕동)	안*근		
46	응천동	산41	임	595	5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	정*식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 위	소유자	
							성명	주소
4	시전동	831-1	매실나무		15.00	주	김*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82 무악현대아파트 ***동 ***호
5	시전동	839	분묘	유연단장	1	식	-	
			석축	3*0.5	1	식	-	
			석축	5*0.3	1	식	-	
8	시전동	866	더덕		150.00	m ²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호 (대림동)
			드릅		30.00	주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호 (대림동)
			다래		2.00	주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호 (대림동)
			그물망		100.00	m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호 (대림동)
10	시전동	872	그물망		12.00	m	-	
			매실나무	R12,R5	6.00	주	-	
			아로니아	H1	5.00	주	-	
			헛개나무	R10	1.00	주	-	
			옷나무	R4	2.00	주	-	
			감나무		1.00	주	-	
			오가피	H1 W1	3.00	주	-	
11	시전동	875-1	드릅나무	R3-7	250.00	주	-	
			감나무	R10 H3	1.00	주	-	
			옷나무	R10	1.00	주	-	
12	시전동	917-1	그물망		3	m	-	
13	시전동	926-1	분묘	유연단장	2	기	김*열	여수시 응남*길*-* (**동)
			석축	9m*0.4	1	식	김*열	여수시 응남*길*-* (**동)
			무궁화	R5 H1-2	19	주	김*열	여수시 응남*길*-* (**동)
			치자나무	H1 W0.5	6	주	김*열	여수시 응남*길*-* (**동)

			감나무	R5 H2	2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철쭉	H1 W0.5	1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측백	H1.2 W0.5	1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화살나무	H1.5 W1	2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무궁화	R3 H1.5	11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무궁화	R7 H1.8	3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석류	R6-8 H2.5-3	6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향나무	R30 H4	1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삼나무	B12 H4	1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헛개나무	R8-12 H8	100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모과나무	R3-5 H2-3	12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헛개나무	R2-4 H5	250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감나무	R15 H4	1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느릅나무	R10 H3.5	1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드릅나무	H2	20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참웃나무	H1.5	5	주	김*열	여수시 용남*길*~*(**동)
14	시전동	926-2	분묘	유연단장	2	기	김*애	여수시 시청서*길 1*~*, *층(*동)
17-1	시전동	940	그물망	15m	1	식	김*수	
			그물망	15m	1	식	김*수	
			농막	1.5*2.6목조 썸나이트	1	식	김*수	
17-2	시전동	940	물탱크		3	식	-	
			그물망	60m	1	식	-	
25-1	시전동	산1305	분묘	유연단장	1	기	-	
			석축	2*0.2	1	식	-	
25-2	시전동	산130-5	분묘	유연단장	1	기	-	
			석축	11m*1	1	식	-	
29	시전동	산139	분묘	유연단장	1	기	서*범	여수시 미평로7*, 20*동140*호 (미평동, **아파트)
30-1	시전동	산169	분묘	유연단장	4	기	-	
30-2	시전동	산169	분묘	유연단장	1	기	-	
32-1	용천동	756-3	영산홍	20년생	6	주	이*곤	여수시 용천중앙로 33, ***동 ***호(용천동,용천지웰아파트)
			벚나무	10년생	1	주	이*곤	여수시 용천중앙로 33, ***동 ***호(용천동,용천지웰아파트)
			황금편백 나무	15년생	8	주	이*곤	여수시 용천중앙로 33, ***동 ***호(용천동,용천지웰아파트)
			동백나무	20년생	2	주	이*곤	여수시 용천중앙로 33, ***동 ***호(용천동,용천지웰아파트)
			향나무	15년생	2	주	이*곤	여수시 용천중앙로 33, ***동 ***호(용천동,용천지웰아파트)
			종려나무	15년생	1	주	이*곤	여수시 용천중앙로 33, ***동 ***호(용천동,용천지웰아파트)

32-2	응천동	756-3	분묘		2	기	무연분묘	
			상석	1.2*0.8	1	식	무연분묘	
			향로석		1.00	식	무연분묘	
33	응천동	776-1	향나무	10년생	8	주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분묘		5	기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망주석		1	식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비석		4	식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아미석		2	식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34	응천동	776-2	향나무	20년생	5.00	주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분묘		7	기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비석		7	식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상석		2	식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향로석		2	식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망주석		1	식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아미석		1	식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농막	판넬조 2*2	4.00	m ²	문*환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호 (풍납동,영남빌라)
35	응천동	905	감나무	10년생	1.00	주	—	—
			그물망		200.00	m	—	—
36	응천동	907-1	분묘		14.00	기	서*섭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 동, 신동아파밀리에)
			향로석		4.00	식	서*섭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 동, 신동아파밀리에)
			상석		4.00	식	서*섭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 동, 신동아파밀리에)
			아미석		3.00	식	서*섭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 동, 신동아파밀리에)
			석축		1.00	식	서*섭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 동, 신동아파밀리에)
			향나무	W1.5~2	20.00	주	서*섭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 동, 신동아파밀리에)
			측백나무	H1.5~2	10.00	주	서*섭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 동, 신동아파밀리에)
			철쭉	W1.5	1.00	주	서*섭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 동, 신동아파밀리에)
동백	H1.5	2.00	주	서*섭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 동, 신동아파밀리에)			
41-1	응천동	산30	분묘		3.00	기	문*열	여수시 문수북12길 *-*(문수동)

42	응천동	산31	분묘		4.00	기	정*완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
			향로석		1.00	식	정*완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
			상석		1.00	식	정*완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
			갓비석		1.00	식	정*완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
			문인석		1.00	식	정*완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
			석축	$10*0.5+8*0.3+3*0.5$	3.00	식	정*완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
47	응천동	산41	영산홍	20년생	8.00	주	정*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황금편백 나무	15년생	4.00	주	정*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편백		1.00	주	정*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분묘		8.00	기	정*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상석		1.00	식	정*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향로석		1.00	식	정*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석축		1.00	식	정*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5.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무선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17.(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5. 2. 3.

여수시장

1.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명칭 : 무선산공원 조성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소라면	죽림리	37	전	463	463	등) 여수시 도원로 *** 실) 여수시 도원로 ***	신*식	해 당	없 음		
소라면	죽림리	39	전	249	249	등) 여수시 시청로 ** , * ****호선원동 **** 실) 여수시 시청로 ** , * ****호선원동 ****	박*혜	해 당	없 음		
소라면	죽림리	41	전	289	289	등) 여수시 안산길 *** , * *등 ***호안선동 **** 실) 여수시 시청로 ** , * ****호선원동 ****	박*혜	해 당	없 음		
소라면	죽림리	382	전	972	972	등) 여수시 쌍봉면 *** 실) -	정*두	해 당	없 음		
소라면	죽림리	383	전	860	860	등) 여수시 화장동 *** 실) 여수시 화산로	서*석	해 당	없 음		

						** (화장동)					
소라면	죽림리	384	전	132	132	등)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실)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서*석	해 당	없 음		
소라면	죽림리	385	전	504	504	등) 여수시 화장동 *** ** 실)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서*수	해 당	없 음		
소라면	죽림리	산59	임	5,058	5,058	등) 여천군 쌍봉면 *** ** 실)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달*서* 현*공* 화*죽* 중*	해 당	없 음		
선원동		산48	임	13,289	13,289X 700/12060	등) 여천군 쌍봉면 *** ** 실) -	서*용	해 당	없 음		
화장동		513-3	전	676	676	등) 서울 양천구 신월동 **, ***** ** ** 실) 서울 양천구 월정로*길 **, ** ** (신월동, *****)	서*례	해 당	없 음		
화장동		529	답	1,653	1,653	등) 여수시 신기동 ***** ** ** 실) 여수시 여문*로 ** **, ** *동***호 (문수동, *****)	박*례	해 당	없 음		
화장동		552-3	전	496	496	등)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 ** *동***호 실)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 ** *동***호	오*구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09-1	임	4,077	4,077X 1/4	등)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실)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서*수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09-1	임	4,077	4,077X 1/4	등) 서울 양천구 월정로 *길 **, ***동***호 (신월동, *****) 실) 서울 양천구 월정로 *길 **, ***동***호 (신월동, *****)	서*례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19	임	8,760	8,760X 6/24	등) 여수시 화산길 ** (화장동) 실) 여수시 덕양로 ** **, ***동***호 (소라면, *****)	서*호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25	임	10,264	10,264	등) 여수시 무선*길**, ***동***호(화장동, *****) 실) 여수시 무선*길**, ***동***호(화장동, *****)	정*엽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26	임	15,174	15,174	등) 여수시 화장동 *** * 실)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서*수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27	임	31,140	31,140	등) 여수시 화장동 *** ** 실) 여수시 화산로 ** *(화장동)	서*수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28	임	11,253	11,253X 68/138	등) 여수시 화장동 *** ** 실)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번길**, ***동***호(장성동,	서*수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28-1	임	11,557	11,557X 68/138	*****) 등) 여수시 화장동 ***.*** 실)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번길**, ***동**호장성동 *****	서*수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30-2	임	3,372	3,372	등) 여수시 ***** 실) 여수시 *****	김*숙	해 당	없 음		
화장동	산136-1	임	6,986	6,986	등) 여수시 공화동 *** 실) 여수시 좌수영로 ***_**, ***호 (문수동,****)	전*여* 지*평* 도*민*	해 당	없 음		
합계	21필지			94,527.55㎡		17명		0명		

○ 물건

물건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라면 죽림리 37	납골묘	4위 봉안	1	기	여수시 도원로 *** (선원동)	신*식	해당없음		
	납골묘	원형(24기)	1	식					
	반월석	—	3	식					
	석등	—	1	식					
	납골묘 표지석	—	1	식					
	합동제단 석	—	1	식					
	망주석	—	2	식					
	향로석	—	1	식					
	화병석	—	1	식					
	받침석	—	1	식					
	경계석	—	1	식					
	농막	철파이프 천막	1	식					
	농막	철파이프 천막	1	식					
	울타리	강파이프철망 콘크리트 기초	90	m					
	울타리	그물망	80	m					
	울타리	그물망	50	m					
	출입문	철망	1	식					
	계단	—	2	식					
	황칠나무	—	1	주					
	대추나무	—	8	주					
	서향	—	3	주					
	꽃사과	—	2	주					
	엄나무	—	15	주					
웃나무	—	3	주						
무화과	—	2	주						
석류나무	—	3	주						
매실나무	—	7	주						
아로니아	—	17	주						
포도나무	—	1	주						

	오가피	—	1	군				
	철쭉	—	2	주				
	황금사철	—	8	주				
	피라칸사스	—	2	주				
	잔디	—	371	m ²				
	은행나무	—	2	주				
	감나무	—	9	주				
	복숭아나무	—	2	주				
	자두나무	—	5	주				
	사과나무	—	3	주				
	호두나무	—	1	주				
	메조나무	—	2	주				
소라면 죽림리 39,41	관리사	철골판넬지붕	33.6	m ²	여수시 시청로 **, *동 ****호 (선원동, ****)	박*혜	해당없음	
	울타리	판넬및그물	1	식				
	양수시설	—	1	식				
	PE관	300mm, 50m	1	식				
	장옥	판넬조	1	식				
	출입문	판넬조	1	식				
	경계석	벽돌	15	m ²				
	통로	—	40	m				
	울타리	—	44	m ²				
	바닥	보도블럭	70	m ²				
	바닥	콘크리트	20	m ²				
	동산이전비	—	1	식				
	화단	—	1	식				
	배롱나무	—	1	주				
	수국	—	1	주				
	천리향	—	1	주				
	골담초	—	1	주				
	아로니아나무	—	17	주				
	감나무	—	4	주				
	석류나무	—	1	주				
	무화과나무	—	8	주				
	복숭아나무	—	3	주				
	매실나무	—	2	주				
	대추나무	—	2	주				
	블루베리나무	—	17	주				
	장미	—	2	주				
	사과나무	—	3	주				
	꾸지뽕나무	—	3	주				
	후박나무	—	3	주				
	라일락	—	1	주				
	포도나무	—	2	주				
	복분자	—	2	주				
감건조그물망	—	1	식					
입구철구조물	—	1	식					

	여주그물망	철파이프그물	1	식				
	블루베리방조망	13*4*2.5	1	식				
	전기유입	40m	1	식				
소라면 죽림리 382	감나무	—	6	주	여수시 덕양로 ***.*(화장동)	정*호	해당없음	
	석류나무	—	1	주				
	배나무	—	1	주				
	포도나무	—	1	주				
	두릅나무	—	2	주				
	가죽나무	—	1	주				
	물통	—	1	식				
관정	중형 계량기 포함	1	식					
소라면 죽림리 383	농막(하우스)	—	1	식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서*석	해당없음	
	분묘	유연단장	3	기				
	가묘	—	1	기				
	상석	—	1	식				
	울타리	그물망	1	식				
	경계석	—	5	M				
	감나무	—	1	주				
	오가피나무	—	1	주				
석류나무	—	1	주					
소라면 죽림리 384	농막(하우스)	철파이프비닐차광막	40	m ²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서*석	해당없음	
	동산이전비	정미기 등	1	식				
	감나무	—	1	주				
소라면 죽림리 산59	분묘	유연단장	13	기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탈* 사* 현* 화* 죽* 중*	해당없음	
	분묘	유연합장	9	기				
	분묘	유연3합장	4	기				
	둘레석	—	26	식				
	상석	—	22	식				
	향로석	—	20	식				
	반월석	大	3	식				
	갓비석	—	6	식				
	비석	—	1	식				
	표석	—	1	식				
	경계석	—	1	식				
	석축	—	1	식				
	망주석	—	6	식				
	문인석	—	4	식				
	동백나무	—	11	주				
	광나무	—	30	주				
	잔디	—	950	m ²				
	철조망	—	30	m				
생울타리	무궁화, 사철, 개나리	50	m					
석축	120m	1	식					
화장동 529	농막(창고)	컨테이너	1	식	여수시 여문*로 **_**, ***동***호(문수동, *****)	박*례	해당없음	
	사무실	컨테이너	1	식				
	데크시설	인조목	1	식				
	차양	어닝	1	식				
적치물	곰뽕이, 벚꽃, 퇴비	1	식					

		등					
	하우스	철파이프조 비닐	101.5	m ²			
	울타리	그물망	1	식			
	울타리	능형망	1	식			
	견사	—	1	식			
	관정	200mm	1	식			
	배전판	—	1	식			
	관정장옥	판넬조	1	식			
	감나무	—	1	주			
	무화과나무	—	50	주			
	석류나무	—	6	주			
	앵두나무	—	1	주			
	물통		1	식			
	바닥	쇄석	60	m ²			
	황칠나무	—	2	주			
	수도파이프	PVC 20mm,65m	1	식			
	PE관	600mm,16m	1	식			
화장동 547-1	농막	—	1	식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서*수	해당없음
	감나무	—	4	주			
화장동 552-3, 산135-1	동백	—	3	주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 ***동***호	오*구	해당없음
	철쭉	—	11	주			
	광나무	—	17	주			
	분묘	평장단장	8	기			
	표석	—	8	식			
	상석	—	2	식			
	향로석	—	2	식			
	석축	—	1	식			
	등근측백	—	15	주			
	밤나무	—	6	주			
화장동 513-3, 산109-1	축사	철파이프강 판지붕	50	m ²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서*수	해당없음
	농막	컨테이너, 갈판포함	1	식			
	관정	중형,관정함 포함	1	식			
	지중화전선	40+20m	2	식			
	물통 및 동산	물통5개포함	1	식			
	염소	—	7	두			
	울타리	—	260	m			
	감나무	—	16	주			
	사과나무	—	16	주			
	배나무	—	5	주			
	호두나무	—	7	주			
	대추나무	—	11	주			
	포도나무	덕시설포함	5	주			
	모과나무	—	12	주			
	복숭아	—	5	주			
	자두나무	—	2	주			
	앵두나무	—	2	주			
	업나무	—	3	주			
	드릅	—	100	주			
	팽나무	—	2	주			

	노간주나무	—	1	주				
	매실나무	—	6	주				
	도라지	—	200	m²				
	더덕	—	36	m²				
	밤나무	—	3	주				
	치자나무	—	15	주				
	유자나무	—	10	주				
	이동식화장실	—	1	식				
	PE관	400mm, 6m	1	식				
	주름관	50mm, 40m	1	식				
화장동 산109-1	분묘	유연단장	12	기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서*수	여수시 가곡길 *~*(선원동)	서*수
	분묘	유연합장	1	기			해당없음	
	상석	—	6	식				
	표석	—	1	식				
	향로석	—	6	식				
	반월석	—	9	식				
	경계석	—	1	식				
잔디	—	550	m²					
화장동 산126	분묘	유연단장	1	기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서*수	해당없음	
	석축	—	1	식				
	철쭉	—	16	m²				
	황금편백	—	1	주				
	밤나무	—	50	주				
화장동 산127	분묘	유연단장	2	기	여수시 화산로 **~*(화장동)	서*수	해당없음	
	상석	—	1	식				
	둘레석	—	2	식				
	갓비석 (오석)	—	1	식				
	반월석	—	4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받침석	—	1	식				
	망주석	—	2	식				
	문인석	—	2	식				
	석등	—	1	식				
	석축	—	1	식				
	반월형석축	—	1	식				
	등근측백	—	2	주				
	분묘	유연단장	2	기				
	상석	—	1	식				
	향로석	—	1	식				
	문인석	—	2	식				
	석축	—	1	식				
	포도나무	—	5	주				
	동백	—	3	주				
	동백	—	2	주				
	동백	—	4	주				
	꽃치자	—	10	주				
	감나무	—	4	주				
	녹차나무	—	35	주				
분묘	유연단장	2	기					
둘레석	—	2	식					

	상석	—	1	식				
	향로석	—	1	식				
	반월석	—	3	식				
	선비석	—	2	식				
	녹차나무	—	16	m²				
	호랑가시 나무	—	1	주				
	리기다소 나무	—	160.4 1	m²				
	소나무	—	113.7 8	m²				
	편백	—	76.43	m²				
	삼나무	—	43.11	m²				
	굴참나무	—	38.19	m²				
	상수리나 무	—	22.12	m²				
	해송	—	22.85	m²				
	밤나무	—	8.2	m²				
	신갈나무	—	2.5	m²				
	오리나무	—	1.5	m²				
	노간주나 무	—	0.17	m²				
	벗나무	—	1.31	m²				
	때죽나무	—	20	주				
	사스레피 나무	—	0.11	m²				
	갈참나무	—	0.14	m²				
	감나무	—	3	주				
화장동 산130-2	분묘	유연단장	2	기	여수시 화산*길**(화장동)	김*숙	해당없음	
	둘레석	—	2	식				
	간비석 (오석)	—	1	식				
	받침석 (대리석)	—	1	식				
	상석	—	1	식				
	반월석	—	4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망주석	—	2	식				
	문인석	—	2	식				
	석등	—	1	식				
	반월형석 축	—	1	식				
	석축	—	1	식				
	동근축백	—	2	주				
	동백나무	—	1	주				
	동백나무	—	1	주				
	벗나무	—	1	주				
	감나무	—	25	주				
	배나무	—	4	주				
매실나무	—	3	주					
화장동 산136-1	망향탑	—	1	식	여수시 좌수영로 ***.**, ***호(문수동, ****)	전*여*지*평*도* 민*	해당없음	
	평안도민 회 공적비	—	1	식				
	공원묘지 표지석	—	1	식				
	상석	—	1	식				
	향로석	—	3	식				

국기봉	—	1	식				
계단	콘크리트	1	식				
파고라	콘크리트	1	식				
콘크리트 벤치	—	10	식				
묘지경계석	—	815	m				
등나무	—	3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1)	1	기				
비석	—	1	식				
석축	—	1	식				
철쭉	—	2	주				
동백	—	2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2,3)	2	기				
비석	—	2	식				
상석	—	1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반월석	—	1	식				
철쭉	—	2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4)	1	기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5)	1	기				
비석	—	1	식				
상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6)	1	기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7)	1	기				
가묘	—	1	기				
상석	—	1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비석	—	1	식				
황금측백	—	2	주				
철쭉	—	2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8)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석축	—	1	식				
철쭉	—	1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9)	1	기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10)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향로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동백	—	1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11)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동백	—	2	주			
황금측백	—	2	주			
석류나무	—	1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12)	1	기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13)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무연단장 (분묘번호14)	1	기			
석축	—	1	식			
분묘	유연평장 (분묘번호15)	1	기			
표석	—	1	식			
화병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평장 (분묘번호16)	1	기			
표석	—	1	식			
화병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17)	1	기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18)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19)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향로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20)	1	기			
상석	—	1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22)	1	기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23)	1	기				
비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25)	1	기				
상석	—	1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가묘	—	1	기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26)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철쭉	—	1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27)	1	기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28)	1	기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29)	1	기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평장합 (분묘번호30)	1	기				
표석	—	1	식				
상석	—	1	식				
화병석	—	1	식				
경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31, 32)	2	기				
상석	—	1	식				
비석	—	2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석축	—	1	식				
황금축백	—	9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33)	1	기				
가묘	—	1	기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상석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34, 35)	2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36)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38)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향로석	—	1	식
꽃석	—	1	식
반월석	—	1	식
석축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39)	1	기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40)	1	기
가묘	—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향로석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41)	1	기
가묘	—	1	기
상석	—	1	식
비석	—	1	식
향로석	—	1	식
철쭉	—	1	주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42, 43)	2	기
사각돌레 석	—	2	식
상석	—	1	식
향로석	—	1	식
경계석	—	1	식
표석	—	1	식
분묘	유연단장 (분묘번호44)	1	기
가묘	—	1	기
비석	—	1	식
상석	—	1	식
향로석	—	1	식
화병석	—	1	식
꽃석	—	1	식

	황금측백	—	2	주				
	PE관	1000m/m	180	m				
	분묘	유연합장 (분묘번호45)	1	기				
	둘레석	—	1	식				
	표석	—	1	식				
	화병석	—	1	식				
	석축	—	1	식				
	동근측백	—	10	주				
	철쭉	—	40	주				
합 계						12명		1명

4. 열람장소 : 여수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원과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5. 2. 3. ~ 2025. 2. 17.(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여수시 공원과 녹지관리팀

- 주소: (우)59683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공원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원과(☎ 061-659-4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3.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돌산공원 조성사업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규모	사업구역 면적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35-1번지 일원	공원시설(73,926㎡), 녹지 및 기타(128,880㎡)	202,806㎡	여수시장

○ 변경 사유: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면적 변경, 소유자(관계인), 지장물 기재사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2020. 6. 25.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7. 6.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5.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공람기간

열람기간	열람시간	열람장소
2025. 2. 4. ~ 2025. 2. 17.(14일간)	09:00 ~ 18:00	여수시청 공원과

6.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2. 4. ~ 2025. 2. 17.

○ 제출방법: 양식(의견서)에 따라 작성 후 여수시청 공원과(공원조성팀) 제출

- 메일 : future486@korea.kr, 팩스(061-659-5852), 우편(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 경기장 1층 공원과)

○ 문의사항: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23, 464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편입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돌산읍 우두리	710	0009	임야	278	278	여수시					
2	“	711	0003	전	1140	268	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로 3**0-18				
3	“	711	0004	전	754	33	여수시					
4	“	711	0006	전	195	121	여수시					
5	“	711	0007	전	1081	1081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길 *-4				
6	“	711	0014	전	820	762	여수시					
7	“	711	0015	전	2552	2187	여수시					
8	“	715	0002	전	2195	135	여수시					
9	“	715	0004	전	744	618	여수시					
10	“	715	0013	전	1084	183	여수시					
11	“	717	0009	대	1009	196	여수시					
12	“	718	0004	전	317	102	여수시					
13	“	793	0000	전	403	403	여수시					
14	“	794	0017	전	3299	2154	박**	여수시 신길남3길 1*-4 (신기동)	박**	여수시 **동 5-5 ***** 1*1-7**	공유	기정
									박**	서울 서초구 **동 13*5 ***아파트 3-6**	공유	
									박**	여수시 **4길 **(안산동)	공유	
									박**	경기 과천시 **동 41 **아파트 8*8-8*	공유	
									박**	광주광역시 *구 **동 769 **아파트 1*4-6**	공유	
									서**	여수시 돌산읍 **길 5*	공유	
14	“	794	0095	전	1938.4	1938.4	여수시					변경
							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길 **				
							여수시					
14	“	794	0100	전	4.4	4.4	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길 **				변경
							여수시					
14	“	794	0101	전	189.9	189.9	여수시					변경
							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길 **				
15	“	794	0018	대	129	129	여수시					
16	“	794	0019	전	1081	1069	여수시					
17	“	794	0020	전	1319	1319	여수시					
18	“	794	0021	전	317	317	여수시					
19	“	794	0022	답	1527	1527	여수시					
20	“	794	0023	전	2400	1123	김**	돌산읍 우두리 30*				
21	“	794	0024	대	446	27	김**	돌산읍 우두리 30*				
22	“	794	0032	전	1263	1263	여수시					
23	“	794	0033	답	1121	1121	여수시					
24	“	794	0034	전	833	833	여수시					

25	“	794	0035	전	89	89	여수시						
26	“	794	0036	전	3660	3660	여수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본번	부번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7	“	794	0037	전	774	774	여수시						
28	“	794	0038	전	912	912	여수시						
	“	794	0039	전	1686	1232	여수시						
29	“	794	0039	전	1686	1232	여수시		채**	전라남도 여수시 **읍 **길 7-6	공유		
30	“	794	0040	전	496	496	여수시						
31	“	794	0041	전	774	774	여수시						
32	“	794	0042	전	813	813	여수시						
33	“	794	0043	전	1884	1884	여수시						
34	“	794	0044	전	1230	1230	여수시						
35	“	794	0045	전	178	178	여수시						
36	“	794	0046	대	3567	3567	여수****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로 13*(**동)					
37	“	794	0047	임야	420	420	국(기획재 정부)						
38	“	794	0048	전	896	896	여수시						
39	“	794	0053	전	1322	1322	여수시						
40	“	794	0063	전	298	298	여수시						
41	“	794	0073	전	1230	1230	여수시						
42	“	794	0081	전	1284	573	여수시						
43	“	794	0088	임야	40683	38086	여수시						
44	“	794	0089	임야	5567	5567	여수*****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들 산길 **로 36**	**은행	광주광역시 **구 **로 22*(**동)(여수지점)	근저당권		
									****은행	서울 **구 은행로 1*(**동)(여수지점)	근저당권		
45	“	796	0032	임야	1349	175	여수****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읍 **길 6*					
							주식회사 ****산업	전라남도 순천시 **로 2**, 1**호(**동, **빌 딩)					
46	“	796	0071	전	20	20	주식회사 **	저리남도여수시****1길 13-*, 2**호(*동)				기정	
		796	0071	전	20.1	20.1	주식회사 **	저리남도여수시****1길 13-*, 2**호(*동)				변경	
47	“	796	0072	전	26	26	장**	저리남도 여수시 **로6** 1**도2**층 (*동****아파트)					
		796	0074	전	13	13							
		796	0075	전	51	51							
“	796	0072	전	90	90	장**	저리남도 여수시 **1길 7-5(**동)						
48	“	799	0009	전	585	585	여수시						
49	“	799	0011	전	595	7	문**	저리남도순천시****1길80 10*도7**층(**도****아파 트)				기정	
		799	0011	전	595	0.01	문**	저리남도순천시****1길80 10*도7**층(**도****아파 트)	**시 **조합	전라남도 순천시 **길 **연(향동)	변경		
		**시 **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읍 **로 **29										
50	“	799	0053	전	1801	1289	김**	경북 경산시 **길 **3(**동)				기정	
		799	0232	전	896	896	김**	여수시 돌산읍 **리 7**4*				변경	
		799	0266	전	99.9	99.9	김**	여수시 돌산읍 **리 7**4*				변경	
		799	0272	전	15.1	15.1	김**	여수시 돌산읍 **리 7**4*				변경	
51	“	799	0054	대	602	602	유**	여수시 돌산읍 우두 7**1**				기정	
		799	0054	대	602	602	김**	여수시 돌산읍 우두 **길 1*-1*				변경	
52	“	799	0055	전	268	268	유**	전라남도 여수시 **읍 **길 2*-14					
53	“	799	0056	전	625	625	여수시						
54	“	799	0057	전	536	536	여수시		유**	인천 **구 ****로1**번길58, 10*동1**5호(**동)	공유	기정	
									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26, 1**동 24**호(**가, 한****드 *차)	공유		
							여수시		유**	인천 **구 ****로1**번길58, 10*동1**5호(**동)		변경	
		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26, 1**동 24**호(**가, 한****드 *차)										

55	“	799	0058	대	602	602	여수시						
56	“	799	0065	공원	4170	4170	여수시						
57	“	799	0075	전	9248	8487	손**	서울 **구 **동 30*~86 **아파트 6**호	김**	서울 **구 **동 7*번지 **아파트 3동 5**호	공유		
58	“	799	0076	공원	16764	16764	여수시						
59	“	799	0078	도로	472	414	여수시						
							여수시		조**	대구시 **구 **동 1가 2**~3**	공유		
									조**	대구시 **구 **동 1가 2**~3**	공유		
									조**	여수시 **동 **1	공유		
									신용**기금	**로 1**(**동)	가압류		
									한국**공사	서울특별시 **구 **로 45*(**동)	가압류		
									주식회사** 신용금고	안양시 **구 **동 6**~2**	가압류		
								세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 2	압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지적 (㎡)	편입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0	돌산읍 후두리	799	0081	전	5315	2475	문**	전라남도순천시****길8*10*동7**호(**동****아파트)	주**	대전 **구 ****로123번길 65-38, 2**동 1**3호			
									이**	광주 **구 **로73번길 40,6**동9**호			
									주**	광주 **구 **로73번길 40,6**동9**호			
									이**	서울 **구 ****로14길 11,1**동2**호			
									주**	서울 **구 ****로14길 11,1**동2**호			
61	“	799	0100	대	20	20	여수시						
62	“	799	0101	대	56	56	여수시						
63	“	799	0103	대	96	96	최**	돌산읍 **리 7**~103 **새마을금고	여수시 돌산읍 **리 7**~18		가압류		
									신용**기금	서울 마포구 **동 2**~5(여수지점)		가압류	
									여수****협동조합	여수시 **동 9**		근저당권	
64	“	799	0104	전	496	79	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중앙2로 6*,1*0*동 7**호					
									여수시				
65	“	799	0130	대	624	624	여수시						
66	“	799	0135	전	1667	1667	김**	강원도 **시 **동 5**~3	김**	강원도 **시 **동 5**~3		공유	
									김**	강원도 **시 **동 5**~3		공유	
									세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 2		근저당권	
67	“	799	0136	전	617	117	여수시						
68	“	799	0137	대	331	331	이**	돌산읍 **리 8**	**새마을금고	여수시 돌산읍 **리 7**~12		근저당권	
69	“	799	0141	도로	21	18	여수시						
70	“	799	0142	도로	47	14	여수시						
71	“	799	0143	도로	209	209	여수시						
72	“	799	0144	전	160	160	조**	경기도**시**구**로122 6**동 4**호 (**동 **빌라)					
							조**	경기도 성남시 **구 **로1** 5**동 4**호 (**동. ****빌라)					
73	“	799	0145	도로	64	64	손**	서울특별시**구**로1** 6**호(**동 **아파트)	김**	서울 강남구 **동 79번지 **아파트 3동5**호	공유		
74	“	799	0146	도로	39	39	여수시						
75	“	799	0150	도로	4390	2023	국(건설부)						

76	“	799	0158	전	416	416	여수시					
77	“	799	0159	전	1198	564	여수시					
78	“	799	0166	도로	505	505	여수시					
79	“	799	0175	대	193	162	여수시					
80	“	799	0177	전	941	639	여수시		유**	인천광역시 **구 *****로130번길 58, 1**동 11**호(**동)		기정
									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 1**동 2**호(****가, 한*** *****3차)		
	“	799	0177	전	941	639	여수시					
							유**	인천광역시 **구 *****로130번길 58, 1**동 11**호(**동)			변경	
							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 1**동 2**호(****가, 한*** *****3차)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본번	부번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81	돌산읍 우두리	799	0180	전	1182	994	이**	돌산읍 **리 7**-33				
82	“	799	0183	전	350	350	유**	전라남도 여수시 **읍 ****길 2*-1*				
83	“	799	0186	전	750	746	조**	경기도성남시**구 ***로122 6**동4**호 (**동**빌라)				기정
	“	799	0186	전	750	746	조**	경기도 성남시 **구 ***로 136, 5**동 4**호(**동, *****)빌라)				변경
84	“	799	0187	전	1326	1326	조**	여수시 군자동 4**				
85	“	799	0198	전	728	635	유**	전라남도 여수시 돌 산읍 ****길 1*				기정
	“	799	0257	전	324.9	324.9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 산읍 ****길 1*				변경
	“	799	0258	전	181.5	181.5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 산읍 ****길 1*				
	“	799	0270	전	3.7	3.7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 산읍 ****길 1*				
	“	799	0271	전	35.1	35.1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 산읍 ****길 1*				
86	“	799	0200	전	9	9	여수시					
87	“	799	0201	전	5	5	여수시					
88	“	799	0202	전	99	99	여수시					
89	“	799	0203	전	2	2	여수시					
90	“	799	0209	전	3654	3654	여수시					
91	“	799	0216	전	15	15	여수시					
92	“	799	0217	도로	173	173	여수시					
93	“	799	0218	도로	50	50	여수시					
94	“	800	0002	도로	57	57	여수시					
95	“	800	0003	전	75	75	여수시					
96	“	801	0001	전	774	774	여수시					
97	“	801	0002	전	539	539	여수시					
98	“	801	0003	전	529	529	여수시					
99	“	801	0005	대	502	502	여수시					
100	“	801	0006	대	414	414	여수시					
101	“	801	0007	전	179	179	여**	여수시 돌산읍 **리 7**-18				

102	“	801	0008	전	288	288	박**	여수시 **로 2**, 2**동 3**호(**동, 여수** **2차)				기정
	“	801	0008	전	288	288	박**	여수시 **동 **6- ** 아파트 **1-**0				변경
103	“	801	0009	전	261	261	여수시					
104	“	801	0010	전	314	314	여수시					
105	“	801	0011	전	1020	1020	여수시					
106	“	801	0012	전	1680	1680	여수시					
107	“	801	0015	전	14	14	여수시					
108	“	801	0016	대	112	112	여수시					
109	“	801	0020	대	850	850	여수시					
110	“	801	0022	전	306	306	여수시					
111	“	801	0027	도로	25	25	여수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지적 (㎡)	편입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12	“	801	0029	도로	616	616	여수시					
113	“	801	0031	도로	81	81	여수시					
114	“	801	0032	도로	133	133	국(건설부)					
115	“	801	0033	도로	129	129	여수시					
116	“	801	0034	도로	102	102	여수시					
117	“	801	0035	전	81	81	여수시					
118	“	801	0036	전	251	251	여수시					
119	“	801	0037	전	100	100	여수시					
120	돌산읍 우두리	808	0001	전	280	20	박**	서울**구***동433 **아파트1**동8**호				
121	“	808	0014	전	297	41	여수시					
122	“	산349	0005	임야	893	893	여수시					
123	“	산349	0006	임야	793	763	여수시					
124	“	산352	0000	임야	496	496	김**	여수시 동*				기정
	“	산352	0000	임야	496	496			김**	여수시 동*		변경
125	“	산353	0000	임야	298	298	최**	여수시 종화동 2**				
126	“	산354	0000	임야	496	496	여수시					
127	“	산355	0001	임야	4055	4055	****주식회사	여수시 신월동 1**~5	박**	서울특별시노원구**로**길5 1**동1**호 (**동**아파트)		기정
	“	산355	0001	임야	4055	4055	****주식회사 박**	여수시 신월동 1**~5		서울특별시**구**로 **길5 **1동**5호 (**동,**아파트)		변경
128	“	산355	0046	임야	6051	6051	국(산림청)					
129	“	산355	0145	도로	1509	1509	국(건설부)					
130	“	산355	0146	도로	188	188	국(건설부)					
131	“	산356	0000	임야	298	298	여수시					
132	“	산361	0001	임야	484	484	여수시					
133	“	산361	0010	도로	23	23	국(건설부)					
134	“	산361	0013	도로	485	485	국(국토해양부)					
135	“	산364	0001	임야	1710	1613	여수시					
136	“	산364	0004	임야	1221	1221	여수시					
137	“	산364	0005	도로	428	144	국(건설부)					
138	“	산367	0000	임야	501	323	여수시					
139	“	산368	0001	임야	13451	13450	박**	성남시**구**동28-1 *****비-21**	박**	여수시 **동 60 **아파트 8-9**		공유
	“	산368	0001	임야	13451	13450	박**	서울특별시 **구 호*로 3*1, 10*동 1**3호(서*동, 서초**이)	박**	경기도 성남시 **구 **로 4**, B동 21**호		공유

140	“	산368	0014	임야	1651	1651	정**	서울 중구 **동 4**-2	정**	서울 강남구 **동 64-4 **아파트 8동 7**호	공유	기정	
									정**	충남 계룡시 **면 **로 1**, 1**동 8**호	공유		
	“	산368	0014	임야	1651	1651	정**	서울 **구 **동 **4-*					변경
							정**	서울 **구 **동 **4 **아파트 *동 **5호					
							정**	여주시 **동 **02					
141	“	산368	0015	도로	9097	2308	국(건설 부)						
142	“	산368	0024	임야	1951	1951	여수시						
143	“	산368	0025	임야	3708	3708	박**	여주시 **동 60 **아파트 8-9**	박**	성남시**구**동28-1 *****비-21**	공유		
	“	산368	0025	임야	3708	3708	박**	경기도 성남시 **구 ***로 4**, B동 21**호	박**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 3** 1**동 13**호(**동, *****)	공유		
144	“	산368	0026	임야	1952	1403	여수시						
145	“	산368	0027	임야	683	483	여수시						
146	“	산368	0028	도로	585	585	국(건설부)						
147	“	산368	0029	도로	2440	1615	국(건설부)						
148	“	산368	0031	도로	2193	957	국(건설교 통부)						
149	“	산368	0032	도로	1316	1316	국(건설교 통부)						
150	“	산368	0034	임야	472	439	여수시						
151	“	산368	0035	임야	39	8	여수시						
152	“	산369	0000	임야	5554	5554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 로5*길 13(**동)	김**	여수시 *****로 2**, 9**호(**동, ****)	공유	기정	
									김**	서울특별시 **구 **로 93, 2**동 11**호(**동, ***** 아파트)	공유		
	“	산369	0000	임야	5554	5554	김**	서울 **구 **동 **7-*					변경
							김**	여수시 **동 **3					
							김**	서울 **구 **동 ***3-1					
153	“	산370	0000	임야	3372	3372	여수시						
154	돌산읍 우두리	산372	0003	임야	206	206	여수시						
155	“	산372	0010	도로	1065	109	국(건설교 통부)						
156	“	산372	0012	도로	910	612	국(건설교 통부)						
157	“	산372	0013	도로	300	26	국(건설교 통부)						

○ 지장물조사(변경)

연번	토지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우두리 794-17	건물	조적조/스레트	m ²	72	**숙	여주시 ***3길 1***(신기동)		기정
		건물	조적조/스레트	m ²	34.9				
		창고	조적조/슬래브	m ²	2.25				
		수목	두릅	주	36				
	우두리 794-101	주택1	조적조 스테이지 붕	m ²	72	서**	전라남도 여주시 **길 5*		변경
		주택2	조립식판넬조판넬지 붕	m ²	25				
		철재대문	W1.2m(W문주)	식	1				
		욕실 및 변소	조적조 스테이지붕 32	m ²	6				
		창고	강파이프조2*1.5	m ²	3				
		정차	강파이프조2.5*2	m ²	5				
		차양1	강파이프조2*15	m ²	30				
		차양2	렉산PC1.5*2	m ²	3				
		바닥포장	콘크리트	m ²	60				
		담장	블럭10*1.8	m ²	18				
		외부수전	-	식	1				
		화단1	조적조20*1.5	식	1				
		화단2	조적조1.5*2	식	1				
		화단3	조적조2*2	식	1				
		배나무	30년생	주	1				
		매실나무	30년생	주	1				
		치자나무	H1.5	주	2				
		산수유	H2	주	4				
		매실나무	H2	주	1				
		홍매화	H1.5	주	1				
		팔손이	H1	주	1				
		수국	H1	주	1				
		치자나무	H2	주	1				
		천리향	H2	주	1				
		동백나무	H2.5	주	1				
		석류나무	20년생	주	1				
감나무	H3	주	2						
생울타리		m	6						
자두나무		주	1						
장미		주	1						
다래나무	-	주	3						
탱자나무 울타리	-	m	10						
사철나무 울타리	-	m	10						

연번	토지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개나리올타리	-	m	5				
2	우두리 794-46	건물	콘크리트/슬래브	m ²	210	여수****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로 13*(**동)		
		웬스	철제	m	136				
3	우두리 799-53	비닐하우스	18*7.8 자동개폐기	m ²	135	김**	여수시 돌산읍 **리 79*-4*		기정
		관정	소형	식	1				
		관정고	블럭조	식	1				
		농사용계량기	-	식	1				
		유해동물퇴치시스템	HSE-S3K	식	1				
		태양식전기목책기	전기고압선	m	65				
		수목	가죽나무	주	1				
		수목	느릅나무	주	1				
	수목	은행나무	주	2					
	우두리 799-266 799-232 799-272	비닐하우스	18*7.5 자동개폐기	m ²	135	김**	여수시 돌산읍 **리 79*-4*		변경
		동산이전비	농기계, 건조기 등	식	1				
		관정	소형	식	1				
		관정고	블럭조	식	1				
		농사용계량기	-	식	1				
		유해동물퇴치시스템	HSE-S3K	식	1				
		태양식전기목책기	전기고압선	m	65				
		가죽나무	R25	주	1				
느릅나무		R20	주	1					
은행나무		R30	주	2					
두릅나무			주	2					
무궁화		주	5						
뽕나무		주	1						
앵두나무		주	2						
4	우두리 799-54	주택	조적조강판지붕 9.6*8.7	m ²	83.52	유**	여수시 돌산읍 **리 ****길 1*-1*		기정
		화장실	조적조슬라브 2.7*2.5	m ²	6.75				
		창고	조적조슬라브 3.6*1.6	m ²	5.76				
		대문	철재슬라브	식	1				
		보일러실	조적조슬라브 0.8*1.6	m ²	1.28				
		창고	철파이프천막 1.8*2	m ²	3.6				
		계단	콘크리트	식	1				
		물통	FRP 받침콘크리트	식	1				
		담장	조적조 48*2	식	1				
		바닥	콘크리트	m ²	41				
		바닥	잔디	m ²	25				
		수도	-	식	1				
		빨래건조대	-	식	1				
		화단	-	식	2				
	수목	사철나무	주	1					
	수목	감나무	주	3					
	우두리 799-54	주택	조적조강판지붕 9.6*8.7	m ²	83.52	김**	여수시 돌산읍 **리 ****길 1*-1*		변경
화장실		조적조슬라브 2.7*2.5	m ²	6.75					
창고		조적조슬라브 3.6*1.6	m ²	5.76					
대문		철재슬라브	식	1					
보일러실		조적조슬라브 0.8*1.6	m ²	1.28					
창고		철파이프천막 1.8*2	m ²	3.6					
계단		콘크리트	식	1					
물통		FRP	식	1					

연번	토지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받침콘크리트						
		담장	조적조 48*2	식	1				
		바닥	콘크리트	m²	41				
		바닥	잔디	m²	25				
		수도	-	식	1				
		빨래건조대	-	식	1				
		화단	-	식	2				
		수목	사철나무	주	1				
		수목	감나무	주	3				
		수목	비파나무	주	1				
		수목	유자나무	주	1				
		수목	가시오가피	주	1				
		수목	목단	주	1				
		수목	동백나무	주	2				
		수목	치자나무	주	2				
		수목	백정화	주	2				
		수목	철쭉	주	2				
		수목	밀감나무	주	1				
		수목	더덕	m²	15				
		수목	목련	주	1				
		수목	단풍나무	주	1				
		수목	매실나무	주	19				
		수목	대추나무	주	3				
수목	유자나무	주	3						
수목	무궁화,사철 울타리	m	80						
수목	뽕나무	주	1						
수목	배나무	주	1						
수목	매실나무	주	17						
그물망	-	m	40						
5	우두리 799-55	수목	감나무	주	13	유**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길 2*-1*		
		수목	매실나무	주	10				
		수목	굴나무	주	1				
6	우두리 799-75	수목	무궁화	주	13	손**	서울특별시 **구 **동 30*-8* **아파트 60* 호		기정
		울타리	그물망	주	1				
		수목	무궁화외1	주	7				
		울타리	그물망	식	1				
		수목	매실나무	주	3				
		울타리	그물망	식	1				
		울타리	그물망	식	1				
		물통	FRP	식	1				
		수목	팔손이	주	4				
		수목	앵두나무	주	3				
		수목	감나무	주	5				
		수목	모과나무	주	3				
		수목	복숭아나무	주	5				
	수목	배나무	주	1					
	수목	동백나무	주	20					
	수목	비파나무	주	2					
		수목	잰피나무	주	1				
		울타리	그물망	주	1				
		수목	무궁화외1	주	7				
	울타리	그물망	식	1					
	수목	매실나무	주	3					
	물통	FRP 1ton	식	1					
	수목	팔손이	주	4					
	수목	앵두나무	주	2					
7	우두리 799-81	물탱크	1.5 ton	개소	2	문**	전라남도 순천시 ****길88 10*동70*호(조례동 ****아파트)		
		수목	아왜나무	주	55				
		수목	동백나무	주	2				
8	우두리 799-103	건물	석면스레트/ 시멘트블럭	m²	27.1	최**	돌산읍 **리 79*-10*		
		수목	조경수	주	8				
		수목	동백나무	주	5				
9	우두리 799-135	창고	천막	m²	2.25	김**	강원도 **시 **동 51*-**		
		분묘	-	개소	3				

연번	토지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물탱크	1.0 ton	개소	1				
		수목	아왜나무	주	48				
10	우두리 799-137	건물	콘크리트 슬래브	m ²	119	이**	돌산읍 **리 80*		
11	우두리 799-180	수목	감나무	주	23	이**	돌산읍 **리 79*-3*		
		수목	조경수	주	10				
		수목	매실나무	주	8				
12	우두리 799-183	수목	감나무	주	17	유**	전남 여수시 **읍 ****길 2*-1*		
		수목	매실나무	주	7				
12	우두리 799-183	수목	사철나무	주	1	유**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길 2*-1*		
		수목	감나무	주	35				
		수목	뽕나무	주	1				
		수목	무궁화	주	1				
		수목	매실나무	주	15				
		수목	유자나무	주	1				
		수목	배나무	주	1				
		수목	편백	주	1				
		무궁화 울타리		m	23				
울타리	그물망	식	1						
13	우두리 799-186	수목	감나무	주	15	조**	경기도 성남시 **구 ***12* 61*동 40*호 (**동, **빌라)		
		수목	매실나무	주	7				
	우두리 799-186	철조망		m	35	조**	경기도 성남시 **구 ***로13* 50*동 40*호(**동, ****빌라)		
수목	감나무	주	80						
수목	매실나무	주	10						
14	우두리 799-187	건물	조적조/스레트	m ²	6.6	조**	여수시 **동 41*		
		수목	감나무	주	49				
15	우두리 799-198	물탱크	1.5 ton	개소	1	유**	전라남도 여수시 **읍 ****길 1*		기정
		물탱크	0.5 ton	개소	1				
		수목	비파나무	주	5				
		수목	감나무	주	6				
		수목	매실나무	주	8				
	우두리 799-270 799-271 799-257 799-258	물탱크	1.5 ton	개소	1	김**	전라남도 여수시 **읍 ****길 1*		변경
		물탱크	0.5 ton	개소	1				
		수목	비파나무	주	5				
		수목	감나무	주	6				
		수목	매실나무	주	8				
수목	굴나무	주	3						
16	우두리 801-8	수목	감나무	주	3	박**	여수시 **로 26*, 20* 동 30*호(**동, 여수웅천 **2차)		기정
		수목	석류나무	주	6				
		수목	매실나무	식	1				
		울타리	그물망	식	1				
	우두리 801-8	수목	감나무	주	3	박**	여수시 **동 43*-** **아파트 70*-11*		변경
		수목	석류나무	주	6				
		수목	매실나무	주	2				
		울타리	그물망	식	1				
		물탱크	0.5ton FRP	식	1				
		화단	조적조1*20	식	1				
창고	판넬조1*2	식	1						
17	우두리 산369	분묘	유연단장	기	7	김**	서울특별시 **구 ***로 36*-1(**동)		기정
	우두리 산369	분묘	유연단장	기	7	김**	서울 **구 **동 23*-**		변경
18	우두리 산64-1	분묘	유연단장	기	2	신**	부산광역시 *구 **로 12* 번길 7*, *동 51*호(**동, **빌라 펜션)		
		석축	자연석	식	3				
19	우두리 368-14	헨스대문	-	식	1	정**	충남 **시 **면 **로 10*, 11*동 80*호		기정
		동백나무 울타리		m	34				
		광나무 울타리		m	87				
		수목	가이스카	주	16				

연번	토지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향나무			정**	전라남도 **시 **동 120*		변경
		수목	목서	주	3				
		수목	영산홍	주	5				
		수목	철쭉	주	5				
		수목	회양목	주	8				
		수목	소나무	주	8				
		수목	편백나무	주	8				
		수목	광나무	주	5				
		수목	측백	주	1				
		분묘	유연단장	기	1				
		상석		식	1				
	향로석		식	1					
	반월석		식	1					
	석축		식	2					
	우두리 368-14	웁스대문	-	식	1				
		동백나무 울타리		m	34				
		광나무 울타리		m	87				
		수목	가이스카 향나무	주	16				
		수목	목서	주	3				
		수목	영산홍	주	5				
		수목	철쭉	주	5				
수목		회양목	주	8					
수목		소나무	주	8					
수목		편백나무	주	8					
수목	광나무	주	5						
수목	측백	주	1						
분묘	유연단장	기	1						
상석		식	1						
향로석		식	1						
반월석		식	1						
석축		식	2						
20	우두리 715-13	분묘	유연단장	기	3	이**	여수시 **읍 ***길 1*		
21	우두리 794-39	분묘	유연단장	기	1	채**	전라남도 여수시 **읍 **길 7-*		
		석축		식	1				
22	우두리 794-45	분묘	유연단장	기	1	위**	전라남도 여수시 **읍 ***길 1*-6, 30*호		
		석축	자연석	식	2				
23	우두리 794-48	농막	목조합판	식	1	장**	전라남도 여수시 **읍 ***로4*-2*,20*동60*호(돌산 ****아파트)		
		울타리	철조망	식	1				
		출입문	합석	식	1				
		수목	감나무	주	22				
		수목	비파나무	주	26				
		수목	살구나무	주	1				
		수목	자두나무	주	3				
		수목	매실나무	주	4				
		수목	동백나무	주	4				
		수목	유자나무	주	4				
		수목	두릅나무	주	580				
		수목	모과나무	주	6				
		수목	복숭아	주	1				
수목	머위	주	60						
24	우두리 794-63외	분묘	유연단장	기	5	임**	전라남도 여수시 **읍 ***길 5*		
		원형돌레석		식	5				

연번	토지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어란석	무궁화문양	식	3				
		상석	1.8*0.9	식	1				
		꽃병석		식	2				
		경계석		식	1				
		향로석		식	1				
		표지석	가족묘비	식	1				
		망주석		식	2				
		수목	동근측백1	주	50				
		수목	동근측백2	주	47				
울타리	그물망	식	1						
25	우두리 신868-1	주택(공가)	목조및블럭조 스레트지붕	m ²	79	박**	서울특별시 **구 **로 39*, 10*동 130*호(**동, ****자이)	박**	
		주택(공가)	목조및블럭조 강판지붕	m ²	104				
26	우두리 신865-46	철탑	기부접지형자립식 안테나높이92m	식	1	여수**** 주식회사	여수시 **로 13* (문수동)		신설

운행정지 명령 등록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25. 2. 4. ~ 2025. 2. 26.(22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 061-659-5165)

2025. 2. 4.

여 수 시 장

운행정지 명령 대상

순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운행정지등록일	비고
1	01*4567	조*수	전라남도 여수시 총무로	2025-02-04	
2	14*0981	(*)동*플*텍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2025-02-04	
3	14*3300	(*)우*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2025-02-04	
4	16*7874	김*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2025-02-04	
5	24*5321	서*균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2025-02-04	
6	26*9131	D* T* I T* U H* YEN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4길	2025-02-04	
7	28*0490	김*목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025-02-04	
8	30*6486	이*윤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대곡길	2025-02-04	
9	31*2652	윤*원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3길	2025-02-04	
10	35*5167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2025-02-04	
11	37*0872	서*옥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2025-02-04	
12	38*2682	주*회사 우*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2025-02-04	
13	38*1621	김*진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2로	2025-02-04	
14	41*3853	이*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2025-02-04	
15	56*6975	최*태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11길	2025-02-04	
16	57*8395	주*회사 우*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2025-02-04	
17	57*5696	안*량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5길	2025-02-04	
18	58*5042	김*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4길	2025-02-04	
19	62*6732	M*Z*MMIL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길	2025-02-04	
20	64*1054	박*래	전라남도 여수시 총무로	2025-02-04	
21	64*5606	조*연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4길	2025-02-04	
22	66*8978	오*천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2025-02-04	
23	71*7177	전*석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2025-02-04	
24	74*2362	김*휘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2025-02-04	
25	78*9199	전*자	전라남도 여수시 총무로	2025-02-04	
26	80*0610	김*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025-02-04	
27	80*1206	유*회사 우*환*철거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2025-02-04	
28	81*9406	(*)남*기*기술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2025-02-04	
29	81*9746	조*만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2025-02-04	
30	82*0646	주*회사 진*중*기*계*기술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2025-02-04	
31	82*2592	정*도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남1길	2025-02-04	
32	83*5789	남*앤*니어링(주)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2025-02-04	
33	86*9165	유*회사 우*환*철거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2025-02-04	
34	86*3458	신*범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5길	2025-02-04	
35	87*7183	박*훈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2025-02-04	
36	87*5128	농*회사법인 회*축산(주)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2025-02-04	
37	88*7379	정*복	전라남도 여수시 소미2길	2025-02-04	
38	89*1322	김*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025-02-04	
39	93*2045	신*영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2025-02-04	
40	94*9066	유*회사 서*이*씨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2025-02-04	
41	95*7718	최*열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025-02-04	
42	95*4699	나*섭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2025-02-04	
43	97*9484	주*회사 대*산*개발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2025-02-04	
44	99*2387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북3길	2025-02-04	

2024년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2024년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제조·유통업체에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4.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24년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
- 나.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다. 사업비 : 8,345천원(보조 6,676, 자부담 1,669)
- 바. 사업내용 : '25년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가. 지원대상 : 본사가 여수시에 소재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제조·유통 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 나.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다. 지원대상 인증제도
- 국제식품 규격 31개 인증

구분	인증명		인증소개	주요국가
할랄 (9종)	1	MUI	무슬림 허용 식품인증	인도네시아
	2	Warees		싱가포르
	3	JAKIM		말레이시아
	4	APHC		홍콩
	5	KMF		한국
	6	KHA(KOREA)		한국
	7	HI-PVT		인도
	8	IHC		파키스탄
	9	ESMA		아랍에미리트
코셔 (5종)	10	OK	유대교식품적법인증	이스라엘, 미국, 유럽
	11	Star-K		
	12	OU		
	13	KOF-K		
	14	cRc		
친환경 (5종)	15	USDA-NOP	미국농무성 유기제품인증	미국
	16	Organic EU	EU 유기농식품인증	유럽
	17	GLOBAL GAP	우수수산물관리기준	전 세계
	18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일본
	19	BAP	우수수산물양식인증	미국
품질 규격 (10종)	20	SQF	식품안전글로벌규격	전 세계
	21	FSSC22000		
	22	GMP		
	23	TRCU(EAC)	러시아 수출 기준규격	러시아
	24	FDA*	FDA 시설등록 및 안전성검사	미국
	25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전 세계
	26	Gluten Free	글루텐 비함유 식품인증	
	27	Non GMO	비유전자변형식품	
	28	Vegetarian	채식주의인증	
	29	FSSAI	인도 수출 기준규격	인도
윤리경영 (2종)	30	BSCI	윤리감사 규격	전 세계
	31	SMETA		

- 수출전략 4개 인증

구분	인증명	인증소개	주요국가
가공인증	IFS	식품안전글로벌규격 인증	전 세계
	BRC		
	FSVP	해외 공급 업체 검증 프로그램 인증	미국
	VQIP	수입자 자율 자격구비 프로그램 인증	

3.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한도

- 국제식품 규격 인증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 수출전략 인증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연장, 사후심사 등 갱신의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범위

- '25년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 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등 인증취득 관련 실비 일반

4. 신청기간: 2025. 2. 4. ~ 2025. 2. 28.(24일간)

5. 신청장소(방문접수)

가. 동지역: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659-3925)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나. 읍·면지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수산업무 담당부서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6. 신청자격

가. 본사가 여수시에 소재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제조.유통 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7.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가. (사)한국수산물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당해연도 지원을 받은 업체
- 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8. 신청서류

- ① 해외식품 규격인증 및 전략인증 지원 신청서 1부
- ② 증빙자료
 - 홈페이지 증빙서류(화면캡처 이미지 등)
 - 사업자 등록증(사본)
 - 인증 취득 품목 홍보물(카달로그)
 - 인증취득 품목 포장표기
 - 수출실적 2022년 ~ 2024년
- ③ 평가가점 제출 서류
 -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업체
 - 수산물품질 관리사 인력 보유
 -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업체
 - 수산식품명인 지정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 사본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9. 사업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25. 2. 28.까지)
- ② 신청업체 적격기준 확인 및 사업대상자 선정(3월)
- ③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 착공(4월)
- ④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정산(12월)

2024년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

여수시 수산가공식품업체들의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및 국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5. 2. 4. ~ 2025. 2. 28.(24일간)
- 신청장기소 : 동지역 수산경영과, 읍·면지역 읍·면사무소
※ 본사 소재지 기준
- 사업대상 : 본사가 여수시에 소재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제조·유통 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 지원내용 : '25년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6,676천 원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8,345천 원(도비 40%, 시비 40%, 자담 20%)
- 신청서류 : 해외식품 규격인증 및 전락인증 지원 신청서 1부

2025. 2. 4.

여 수 시 장

해외식품 규격인증 및 전략인증 지원 신청서

(소관부서 : 실.과)

기본 항목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 법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 여부		(여 · 부)	
	생산분야 선택	가공 <input type="checkbox"/> , 유통판매 <input type="checkbox"/> , 수출 <input type="checkbox"/>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한글)			
	공장주소			
	대표자 명	연락처		
	담당자 명	부서명(직위)		
		전화번호(HP)		
	이메일	팩스번호		
	주요 수출품목	주요수출(예정)국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수출액 (총액 :)		직접수출
		간접수출		
회사소개	* 회사 연혁, 주요시설(장비 가공시설 등), 등 소개			
신청인증	신청인증명	구분		(신규, 갱신)
	신청품목	상품명/원료명		
	HSK코드			
	신청 예산	소요비용		
	인증기관	인증취득비용		
	컨설팅기관	컨설팅비용		
	컨설팅 담당자	컨설팅 연락처		
	비고			

○ 평가항목 및 증빙자료 제출

수출실적(2022 ~ 2024년)	*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홈페이지	
포장표기 유무	*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홍보물 유무	*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최초사업 신청 업체	*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해외시장 개척 전략 및 추진 체계	* 신청업체의 해외무역현황 및 인증관련 품목의 해외무역실적, 해외 무역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인증취득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 품목의 인증취득 적합성	* 해당품목의 해외 무역 적합성, 시장 확대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국가에 대한 무역 계획	*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 및 무역을 위한 네트워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자료 제출 목록	① 홈페이지 증빙서류(화면캡처 이미지 등), ② 사업자 등록증(사본), ③ 인증 취득 품목 홍보물(카달로그), ④ 인증취득 품목 포장표기, ⑤ 수출실적 2022 ~ 2024년
평가 가점 제출 서류	①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업체, ② 수산물품질 관리사 인력 보유, ③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업체, ④ 수산식품명인 지정업체, ⑤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⑥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 사본, ⑦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위의 사업신청을 위한 신청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지방비 투자 계획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수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사업비						

20

기초지방자치단체명

(시군명) 단체장명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W)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p>「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p> <p>전라남도지사 귀하</p>					
불 입 :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위치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총사업비

2. 사업추진성과

-

3.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추진방안

-

4. 성과목표

-

5. 주요일정표

-

6. 관리운영방안

-

7. 어업인참여 · 운영계획의 적정성

- 어업인 의견수렴 여부 등
- 어선세력, 부지여건 등 지역여건 반영여부 등

8 검토의견

-

전라남도지사 귀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전라남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사.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아.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
 -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틀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7.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액은 원(%)으로 한다.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11.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그 밖의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명의, 다만, 도지사가 5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통장 사용이 가능)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12. 지방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회계연도 내(12월 31일까지)에 완료하도록 한다.
13.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액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14.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5.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6.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7.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18.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9. 지방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 지방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라남도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21.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22.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

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4. 지방보조사업자는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 착공 시 공사표지판을, 시설 준공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한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6.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법령 위반 등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2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명 :
- 사업기간 :
- 교부결정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교부조건)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비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사업실적 :

- 붙임 : 1. 세부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4.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세부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설정) <input type="checkbox"/>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input type="checkbox"/>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input type="checkbox"/>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월○일		○월○일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취 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교부조건)	%	집행액	%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비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자부담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비목	지출 일자	지출 금액	지출내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계						
보 조 금	소계					
자 부 담	소계					

※ 지출일자는 유리알카드 결제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사업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	당초계획액 (A)	실제 사용액 (B)	증 감 (B-A)	집행율 (B/A*100)
계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비 고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 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정(W)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정(W)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 부 결정액	자 금 교부액	교 부 액 재 원 구 분				자체 부담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교부금액 (A)								
보조금 확정액(B)								
차액(A-B)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 “감리자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여수시장

1. 공고기간 : 2025. 2. 3.(월) ~ 2025. 2. 10.(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여수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제일건설(주) 대표 허만공(☎062)607-55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다. 시공자 : 제일건설(주) 대표 허만공(☎062)607-55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라. 설계자 : (주)엠에이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한일호/정형무(☎02)520-9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8길 19(양재동)

마.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66-1 일원
- 대지면적 : 31,064.00㎡
- 연면적 : 93,981.1438㎡
-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지하1층, 지상20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665세대
- 공사기간 : 2025. 03. ~ 2027. 11. (33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3. 07. 05.

바. 사업비

- 총사업비: 229,330,367천원
- 대지비: 35,401,287천원
- 총공사비: 161,647,71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 1) 건축감리 대상 공사비 : 139,582,805천원
 -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22,064,913천원
-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의 비용임.
-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3,241,125,218원(감리대상공사비,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3,143,891,461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죽림1지구 A5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5년 03월 01일
 ■ 공 사 기 간 : 2025년 03월 01일 ~ 2027년 11월 30일 (33개월)

년도	2025												2026												2027												비고
	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전체공정																																		2025.03.01~2027.11.30 (33개월)			
건축공사																																		2025.03.01~2027.11.30 (33개월)			
구조채공사																																				2025.07.01~2026.10.31 (16개월)	
도목공사																																				2025.03.01~2025.10.31 (8개월) 2027.01.01~2027.11.30 (11개월) (총 19개월)	
설비공사																																				2025.06.01~2027.11.30 (30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2. 11.(화) 09:00 ~ 2025. 2. 13.(목)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라.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2. 13.(목) 11:00부터, 입찰집행관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5. 2. 14.(금) 09:00 ~ 2025. 2. 18.(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2. 19.(수) 09:00 ~ 2025. 2. 21.(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 점 처리함.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 :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 1점 가점 부여.(단, 50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① 사업주체 “제일건설(주)”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② 시공사 “제일건설(주)”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0.00점
-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 2024. 10. 8.)」 제10조에 따릅니다.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체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⑩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2, 3, 4
- 3) 재무상태 건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유의사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유의사항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6)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 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8) 감리원배치계획

: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9) 업무중첩도 관련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 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3)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4) 기타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 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

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 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6)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

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 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건축, 건축, 설비, 토목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5번째부터는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합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마지막 1명은 부분 배치 가능합니다.
(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 3)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 4)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의 일일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한 금액은 공사진척률에 관계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 3)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4) 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공동주택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100%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건설공사, 토목건설공사 또는 기타설비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감리원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차.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공종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거.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및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 너. 비상주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에 총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분야별감리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머.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버.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최근 1년간 타 시·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감리원 배치기간의 감리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감리원 배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첩도에 포함합니다.
- 어.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며, 공고내용, 평가표 등이 예전 기준, 자료이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처. 해당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될 예정으로 낙찰 후 사업주체 변경이 진행 될 예정이며 용역계약시 변경된 사업주체와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

이 승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커.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095)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2025. .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명]

[별지 제1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층, 동, 세대	m ²	준공일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	전화번호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2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가항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육훈련	2.5 0.5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 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 리 원	총괄 감리 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야 별 감리 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 주 감 리 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7210mm×297mm[백상지(80g/㎡)]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상태 건 실 도	5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점수</th> <th style="width: 20%;">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 <th style="width: 20%;">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th> <th style="width: 35%;">기업 신용평가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td> <td style="text-align: center;">AAA</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A⁺, AA⁰, AA⁻</td> <td style="text-align: center;">A1</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⁰, 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⁰</td> <td style="text-align: center;">A2⁰</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⁰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2</td> <td style="text-align: center;">BBB⁺</td> <td style="text-align: center;">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BB⁰</td> <td style="text-align: center;">A3⁰</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⁰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BB⁻</td> <td style="text-align: center;">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4</td> <td style="text-align: center;">BB⁺, BB⁰</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⁰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⁰</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 B⁰, B⁻</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⁰, 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d style="text-align: center;">C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C 이하</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 </tr> </tbody> </table>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 , AA ⁰ , AA ⁻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AA ⁰ , AA ⁻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 에 준하는 등급)	A ⁰	A2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⁰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BBB ⁰	A3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3.4	BB ⁺ , BB ⁰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 ⁻	B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에 준하는 등급)	B ⁺ , B ⁰ ,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 B ⁰ , B ⁻ 에 준하는 등급)	2.6	CCC ⁺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 이하에 준하는 등급)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 , AA ⁰ , AA ⁻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AA ⁰ , AA ⁻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 에 준하는 등급)																																													
	A ⁰	A2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⁰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BBB ⁰	A3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3.4	BB ⁺ , BB ⁰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 ⁻	B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에 준하는 등급)																																													
	B ⁺ , B ⁰ ,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 B ⁰ , B ⁻ 에 준하는 등급)																																													
2.6	CCC ⁺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 이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p>(2) 감리업무 수행실적</p>	<p>12</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p>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 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p> <p>*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 ÷ (4년×365일)] = 1,750,684,931(원)</p>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p>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 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p> <p>*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 ÷ (5년×365일) = 1,599,452,054(원)</p>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data-bbox="419 1570 1259 1989"> <thead> <tr> <th>공사규모</th> <th colspan="5">기준금액 및 배점</th> </tr> </thead> <tbody> <tr> <td>1,500세대 이상</td> <td>350이상</td> <td>350미만 250이상</td> <td>250미만 150이상</td> <td>150미만 70이상</td> <td>70미만</td> </tr> <tr> <td>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td> <td>250이상</td> <td>250미만 150이상</td> <td>15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5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td> <td>150이상</td> <td>15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30이상</td> <td>30미만</td> </tr> <tr> <td>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td> <td>70이상</td> <td>7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10이상</td> <td>10미만</td> </tr> <tr> <td>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 30이상</td> <td>30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세대 미만</td> <td>10이상</td> <td>10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배 점</td>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p>산출근거</p>		<p>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p>																																																		

(3) 행정제재	9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p>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p>●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table border="1" data-bbox="432 1675 1265 1787"> <tr> <td>구 분</td> <td>3년미만</td> <td>3년 이상 6년 미만</td> <td>6년 이상 10년 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p>●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p>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5%;">3% 이상</td> <td style="width: 15%;">3.0% 미만 2.5% 이상</td> <td style="width: 15%;">2.5% 미만 2.0% 이상</td> <td style="width: 15%;">2.0% 미만 1.5% 이상</td> <td style="width: 15%;">1.5% 미만 1.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d>0.5</td> </tr> </table> <p>● 교육훈련(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70%;">(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td> </tr> <tr> <td></td> <td>(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td> </tr> </table>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신규감리원 배치	2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 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5%;">1,000세대 미만</td> <td style="width: 15%;">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td> <td style="width: 15%;">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 <td style="width: 15%;">2,000세대 이상</td> </tr> <tr> <td>0명</td> <td>2.0점</td> <td>0점</td> <td>0점</td> <td>0점</td> </tr> <tr> <td>1명</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d>0점</td> </tr> <tr> <td>2명</td> <td>2.0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r> <tr> <td>3명</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d>1.5점</td> </tr> <tr> <td>4명이상</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r> </table>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 4																																

(6) 교체빈도	7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text{교체빈도율(\%)}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table border="1" data-bbox="443 667 1190 801"> <tr> <td>비율</td> <td>5%미만</td> <td>5%이상 10%미만</td> <td>10%이상 15%미만</td> <td>15%이상 20%미만</td> <td>20% 이상</td> </tr> <tr> <td>배점</td> <td>7</td> <td>5</td> <td>3</td> <td>1</td> <td>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p>※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p>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7) 가점	3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table border="1" data-bbox="418 1594 1246 1794"> <tr> <td>구분</td> <td>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td> <td>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 <td>2,000세대 이상</td> </tr> <tr> <td>1명</td> <td>1.0점</td> <td>0.7점</td> <td>0.5점</td> </tr> <tr> <td>2명</td> <td>1.0점</td> <td>1.0점</td> <td>0.7점</td> </tr> <tr> <td>3명 이상</td> <td>1.0점</td> <td>1.0점</td> <td>1.0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산출근거																				

	(1) 지역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만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5px;">배점</td> <td style="padding: 5px;">주택건설지역</td> </tr> <tr> <td style="padding: 5px;">1</td> <td style="padding: 5px;">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 </tr> </table>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산출근거							
	(1) 설계용역수행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산출근거							
(8) 적격여부	[적·부] 감리원 배치계획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p>[적·부] 업무 중첩도</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p>※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산출 근거</p>											
<p>[적·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p>	<p>○ 평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p>- 평가방법</p> <table border="1" data-bbox="438 1713 1257 1832"> <thead> <tr> <th>구분</th> <th>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th> <th>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h> <th>2,000세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추가인원</td> <td>1명</td> <td>2명</td> <td>3명</td> </tr> </tbody> </table>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p>산출 근거</p>											

나. 감리자(감리회사)

(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산출근거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18	<p>○ 평가 및 산정방법</p> <p><기본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란 ①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p><배점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p>※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배점</th> <th>18 (15)</th> <th>16.5 (13.5)</th> <th>15 (12)</th> <th>13.5 (10.5)</th> </tr> </thead> <tbody> <tr> <td>1천세대 이상</td> <td>12년 이상</td> <td>12년미만 10년이상</td> <td>10년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td> </tr> <tr> <td>1천세대 미만</td> <td>10년 이상</td> <td>10년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td> </tr> </tbody> </table> <p>※ 면접(발표)은 실시하지 않음(면접 실시 배점 적용 없음)</p>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p>(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p>	<p>3</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절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분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p>-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p> <table border="1" data-bbox="416 539 1246 745"> <tr> <td>구 분</td> <td>500 미만</td> <td>500 이상 1,500 미만</td> <td>1,500 이상 2,500 미만</td> <td>2,500 이상</td> </tr> <tr> <td>쪽 수</td> <td>15쪽 이상</td> <td>20쪽 이상</td> <td>25쪽 이상</td> <td>30쪽 이상</td> </tr> <tr> <td>부 문 (내 용)</td> <td colspan="4">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td> </tr> </table> <p>※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p>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p>산출근거</p>																			
<p>(라) 자격가점</p>	<p>(0.2)</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p>산출근거</p>																			
<p>(마) 감점</p>	<p>(-3.0)</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p>◦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p> <p>◦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p>산출근거</p>																			
<p>(-1) 교체 빈도</p>	<p>(-1)</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 																	

		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 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 $[(47-1)/2]$ 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	---	---	---	---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2
----	---	----	----	----	---

--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으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9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가) 등급	2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공사규모</th> <th colspan="3">점 수</th> </tr> <tr> <th>특급건설기술자</th> <th>고급건설기술자</th> <th>중급건설기술자</th> </tr> </thead> <tbody> <tr> <td>1천세대 이상</td> <td>2</td> <td>1.8</td> <td>1.6</td> </tr> <tr> <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 colspan="2">고급건설기술자 이상</td> <td>중급건설기술자</td> </tr> <tr> <td colspan="2">2</td> <td>1.8</td> </tr> <tr> <td rowspan="2">300세대 미만</td> <td colspan="3">중급건설기술자 이상</td> </tr> <tr> <td colspan="3">2</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점 수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공사규모	점 수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7	<p>○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p> <p>< 기본자격요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p>※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p>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p>- 토목분야 감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p>- 설비분야 감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p>- 공무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p>※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06 1541 1264 1818"> <thead> <tr> <th rowspan="2">공사규모</th> <th colspan="4">점 수</th> </tr> <tr> <th>10년 이상</th> <th>10년 미만 8년 이상</th> <th>8년 미만 6년 이상</th> <th>6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1천세대 이상</td> <td>7</td> <td>6.3</td> <td>5.6</td> <td>4.9</td> </tr> <tr> <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6년 이상</td> <td colspan="2">6년 미만 2년 이상</td> <td>2년 미만</td> </tr> <tr> <td>7</td> <td colspan="2">6.3</td> <td>5.6</td> </tr> <tr> <td rowspan="2">300세대 미만</td> <td colspan="2">2년 이상</td> <td colspan="2">2년 미만</td> </tr> <tr> <td colspan="2">7</td> <td colspan="2">6.3</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점 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공사규모	점 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산출근거		<p>-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p>																																		
(다) 자격가점	(0.1)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배점 : 0.1점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 																																		

		무분야 및 전문분야 “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 근거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건축 : 토목 : 설비 :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4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p>※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08 913 1264 1016"> <tr> <td>경 력</td> <td>10년 이상</td> <td>10년미만 5년이상</td> <td>5년 미만</td> </tr> <tr> <td>배 점</td> <td>4점</td> <td>2.5점</td> <td>1점</td> </tr> </table> <p>※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함</p>	경 력	10년 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경 력	10년 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산출근거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다) 감점	(-2)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1) 교체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업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우선순위 3개업체)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 괄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우선순위 3개업체)**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명	분야	등급자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고
	사업명	기간				
신규 감리 원						
		소계				년

<감리원 배치 계획표>

(예시)

구분	분야	성명	등급	투입기간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년				년				년							
				1	2	3	4	1	2	3	4	1	2	3	4				
총괄	건축	○○○																	
분야별	건축	○○○																	
	토목	○○○	특급																전반기
		○○○	특급																후반기
	설비	○○○																	
비상주	건축	○○○																	15%이내
	○○	○○○																	
신규	건축	○○○																	
	○○	○○○																	
	○○	○○○																	
	○○	○○○																	
비평가	건축	○○○																	
	설비	○○○																	
	토목	○○○																	
	○○	○○○																	
	○○	○○○																	
추가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정 인·월 수 : 인·월
- 투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상기 서식에 맞추어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으로 제출가능하며, 법정인·월수 산정근거 제시 바람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 - 5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 - 2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광무동 742-25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2. 4.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광무동 742-25번지
2. 도로면적 : 20㎡
3. 도로길이 : 20m
4. 도 로 폭 : 1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22	20	
광무동	742-25	대	12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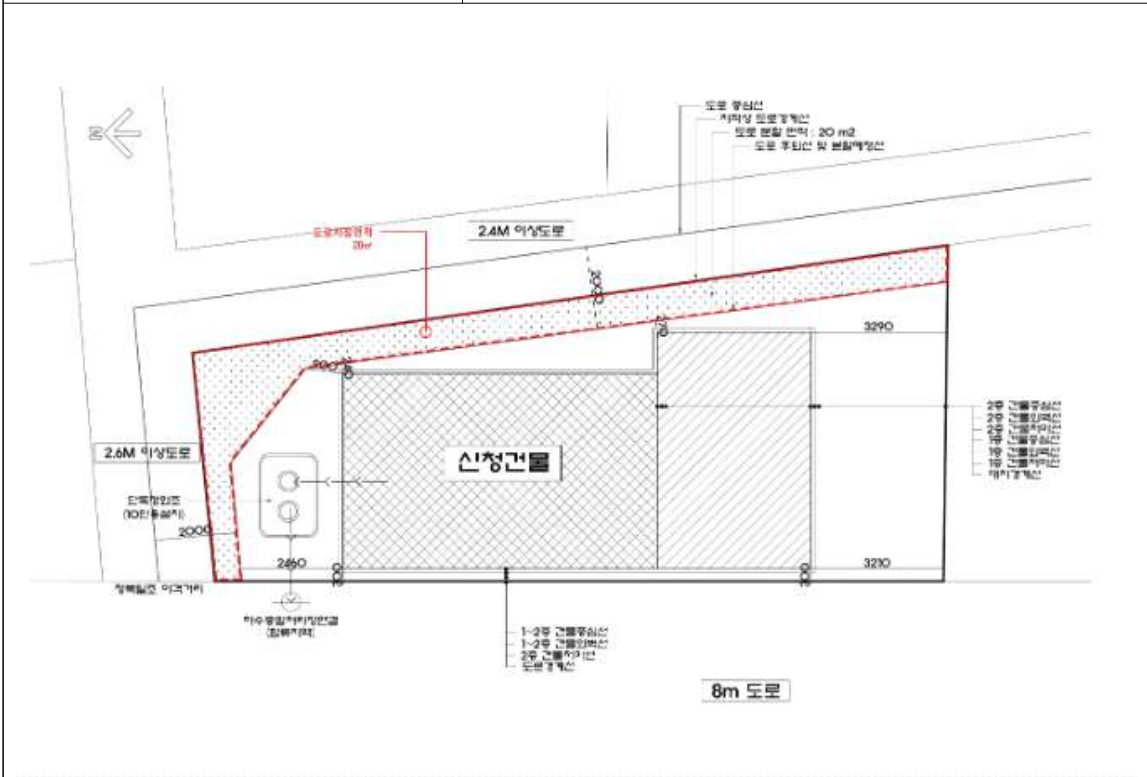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치도



현황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3-56호(2024. 1. 4.))」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4.

여수시장

1. 공고기간 : 2025. 2. 3.(월) ~ 2025. 2. 10.(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여수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제일건설(주) 대표 허만공(☎062)607-55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다. 시공자 : 제일건설(주) 대표 허만공(☎062)607-55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라. 설계자 : (주)엠에이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한일호/정형무(☎02)520-9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뒤편로18길 19(양재동)

마.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66-1 일원
- 대지면적 : 31,064.00㎡
- 연면적 : 93,981.1438㎡
-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지하1층, 지상20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665세대
- 공사기간 : 2025. 03. ~ 2027. 11. (33개월)
※ 소방공사기간(예정) : 2025. 06. 01.~2027. 11. 30.(3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3. 07. 05.

바. 사업비

- 총사업비 : 229,330,367천원
- 대지비 : 35,401,287천원
- 총공사비 : 161,647,71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 1) 감리 대상 공사비 : 6,789,205천원
 -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54,858,513천원
-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1,088,208,183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055,561,937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5년 03월 01일
 ■ 전 체 공 사 기 간 : 2025년 03월 01일~ 2027년 11월 30일 (33개월)
 ■ 소 방 공 사 기 간 : 2025년 06월 01일~ 2027년 11월 30일 (30개월)

년도	2025												2026												2027											비고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전체공정																																		2025.03.01~2027.11.30 (33개월)		
소방공사																																		2025.06.01~2027.11.30 (30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2. 11.(화) 09:00 ~ 2025. 2. 13.(목)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2. 13.(목) 11:00부터, 입찰집행관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5. 2. 14.(금) 10:00 ~ 2025. 2. 18.(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2. 19.(수) 09:00 ~ 2025. 2. 21.(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2) 자기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세부평가내역은 열람불가)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 수행금액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공동주택에 한하며 수행실적의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있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함,
 -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을 이야기하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교를 참조 바랍니다.

나. 감리원

-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회사 소속인 자.
- 2) 상주감리인 · 월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부여

9.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우선순위(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 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3-56호, 2024. 1. 4.)」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4.44%**

나. 평균 유동비율 : **128.43%**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 4)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10호 서식] - 나라장터 입찰서로 같음하오니 제출하지 않습니다.
- 5)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 6)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3-56호, 2024. 1. 4.)」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1)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 2)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실안임)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 증명서, 감리원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증명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11)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서식 참고하여 작성)
 - 12) 그 밖에 1)~11)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 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6)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초과하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점수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 7)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 실적상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기준 금액임.
- 8)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 9)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함.(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10)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4) 교육: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			구분					미제출	작업기법						미제출
			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수 (표지 및 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대책방안	적합		부적합										
			3쪽 내외	2쪽 미만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함.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하.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함.

거. 해당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될 예정으로 낙찰 후 사업주체 변경이 진행 될 예정이며 용역계약시 변경된 사업주체와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이 승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너.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095)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소 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선정신청

(사업명 :)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계획내용	위치	대지면적 m ²	착공일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m ²	준공일		
	설계업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참여감리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임					
	보조					
	보조					
	보조					
	보조					

「소방시설공사법」 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⑪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p>「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50	<p>○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p> <p>○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h> <th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상</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3억원 미만</td> <td>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2</td> <td>11</td> <td>10</td> <td>9</td> <td>8</td> </tr> </tbody> </table> <p>○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h> <th>등 급</th> <th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00억원 이상</td> <td>특급 (소방 기술사)</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특급</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고급</td> <td>8 이상</td> <td>8 미만 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td> </tr> <tr> <td rowspan="3">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특급 (소방 기술사)</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특급</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고급</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 rowspan="3">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 <td>특급 (소방 기술사)</td> <td>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특급</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고급</td> <td>6 이상</td> <td>6 미만</td> <td>5 미만</td> <td>4 미만</td> <td>3 미만</td> </tr> </tbody> </tabl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30] (-)																																																																																																						
(2) 소방분야 경력	(12)																																																																																																						
(3) 참여분야 경력	(12)																																																																																																						

			5 이상	4 이상	3 이상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6)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산출근거 (별첨 1)	- 소방분야경력 :	일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 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8)																																						
	(2) 소방분야 경력			<table border="1"> <tr> <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 <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d> </tr> <tr> <td>100억원 이상</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3억원 미만</td> <td>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td> <td>7.7</td> <td>7.4</td> <td>7.1</td> <td>6.8</td> </tr> </tabl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산출근거 (별첨 2)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점 수</td> </tr> <tr> <td>100% 이상</td> <td>10</td> </tr> <tr> <td>80% 이상 100% 미만</td> <td>9</td> </tr> <tr> <td>60% 이상 80% 미만</td> <td>8</td> </tr> <tr> <td>40% 이상 60% 미만</td> <td>7</td> </tr> <tr> <td>40% 미만</td> <td>6</td> </tr> </table>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산출근거 (별첨 3)		누계실적금액 : 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10 [7]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설도 가) 자본비율	[3]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나) 유동비율	(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산출근거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 이상</td> <td>100% 미만 75% 이상</td> <td>75% 미만 50% 이상</td> <td>5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0.85</td> <td>0.70</td> <td>0.55</td> <td>0.4</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 이상</td> <td>100% 미만 75% 이상</td> <td>75% 미만 50% 이상</td> <td>5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0.8</td> </tr> </table>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10 (4)	<p>○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p> <p>-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p> <p>-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5년 이하</th> <th>5년 초과 10년 이하</th> <th>10년 초과 20년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p>○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p> <p>○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p>○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 이상</th> <th>3.0% 미만 2.5% 이상</th> <th>2.5% 미만 2.0% 이상</th> <th>2.0% 미만 1.5% 이상</th> <th>1.5%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4</td> <td>3.5</td> <td>3.0</td> <td>2.5</td> <td>2.0</td> </tr> </tbody> </table>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p>○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p> <p>-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p> <p>-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p>													
산출근거			<p>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p> <hr/> <p>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p> <hr/> <p>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p>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 중첩도		10 (10)	<p>○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책임감리원</td> <td>보조감리원</td> </tr> <tr> <td>점 수</td> <td>7</td> <td>3</td> </tr> </table> <p>-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 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p>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산출근거			<p>책임감리원 :</p> <p>보조감리원 :</p>														
바. 교체빈도	1) 감리업체	5 (2.5)	<p>○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교체빈도 (%)</td> <td>10% 미만</td> <td>10% 이상 20% 미만</td> <td>20% 이상 30% 미만</td> <td>30% 이상</td> </tr> <tr> <td>점 수</td> <td>2.5</td> <td>2</td> <td>1.5</td> <td>0</td> </tr> </table>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감리원	(2.5)	<p>○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p>														
산출근거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5 (3)	<p>○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d>0</td> </tr> </table>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2) 작업기법	(2)	<p>○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d>0</td> </tr> </table>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			절대평가 :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지역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산출근거		지 역 : 책임감리원 : 부 실 별 점 :

[별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 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2]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 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시작일	종료 (예정)일	감리비	기성실적 (비율)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센터)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5억미만	30	70	$7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5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50	50	$5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이상	70	30	$30 -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 | | 는 절대값 표시임.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4.

여수시장

1. 공고기간 : 2025. 2. 3.(월) ~ 2025. 2. 10.(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여수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제일건설(주) 대표 허만공(☎062)607-55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다. 시공자 : 제일건설(주) 대표 허만공(☎062)607-550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라. 설계자 : (주)엠에이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한일호/정형무(☎02)520-9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8길 19(양재동)

마.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66-1 일원
- 대지면적 : 31,064.00㎡
- 연면적 : 93,981.1438㎡
-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지하1층, 지상20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665세대
- 공사기간 : 2025. 03. ~ 2027. 11. (33개월)
-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5. 06. 01.~2027. 11. 30.(3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3. 07. 05.

바. 사업비

- 총사업비 : 229,330,367천원
- 대지비 : 35,401,287천원
- 총공사비 : 161,647,71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 1) 감리 대상 공사비 : 12,576,192천원
 -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49,071,526천원
-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정보통신, 소방 공사의 비용임.
-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사. 감리대가 : 787,000,057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763,390,055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죽림1지구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5년 03월 01일
- 전 체 공 사 기 간 : 2025년 03월 01일 ~ 2027년 11월 30일 (33개월)
- 전 기 공 사 기 간 : 2025년 06월 01일 ~ 2027년 11월 30일 (30개월)

년도	2025											2026											2027											비고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전체공정																																		2025.03.01~2027.11.30 (33개월)
소방공사																																		2025.06.01~2027.11.30 (30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2. 11.(화) 09:00 ~ 2025. 2. 13.(수)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2. 13.(목) 11:00부터, 입찰집행관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5. 2. 14.(금) 10:00 ~ 2025. 2. 18.(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2. 19.(수) 09:00 ~ 2025. 2. 21.(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사자원부고시 제2023-36호(2023. 3. 2.))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함.(단, 80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5 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4.44%**

나. 평균 유동비율 : **128.43%**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임감날인)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1.총괄표, 비교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3]

5)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

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 업무 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8)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한국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			구분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점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작업기법			구분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점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구 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따르며, 공고문의 내용과 위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하. 해당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될 예정으로 낙찰 후 사업 주체 변경이 진행 될 예정이며 용역계약시 변경된 사업주체와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 이 승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거.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 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 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095)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

(사업명 :)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p>■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p>		
감리 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 등급/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p>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p>		

1.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가. 지 역		1.5			
	1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5	다. 부실벌점		-5			
합 계							
<p>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 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 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점산정근거를 비교란에 기재할 것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소 계																																													
가. 참여감리원		50																																											
가. 참여 감리원	(1) 책임 감리원 (가)등급	[25] (-)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나)경력 및 실적	(25)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th> <th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 <td>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 3년이상</td> <td>3년미만</td> </tr> <tr> <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8년이상</td> <td>8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1,200세대이상</td> <td>15년이상</td> <td>15년미만 12년이상</td> <td>12년미만 9년이상</td> <td>9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5</td> <td>22</td> <td>19</td> <td>16</td> <td>13</td> </tr> </tbody> </table> <p>※[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 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th> <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 <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 <td>1,200세대이상</td> </tr> </thead> <tbody> <tr> <td>년 수</td> <td>2년</td> <td>3년</td> <td>4년</td> </tr> </tbody> </table>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2) 보조 감리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14] (-)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14)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th> <th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 <td>3년이상</td> <td>3년미만 2년이상</td> <td colspan="2">2년미만</td> </tr> <tr> <td></td> <td>14</td> <td>12</td> <td colspan="2">10</td> </tr> <tr> <td>1,200세대이상</td> <td>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4</td> <td>12</td> <td>10</td> <td>8</td> </tr> </tbody> </table> <p>※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비 상 주 감리원 (가) 등급	[11] (2)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배점기준											
	(나) 경력 및 실적	(9)	<table border="1"> <tr> <td>경 력</td>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7년이상</td> <td>7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9</td> <td>7</td> <td>5</td> <td>3</td> </tr> </table> <p>※[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산출근거		(1) 등 급 :												
산출근거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 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산출근거		○ 연면적 :	m ²	※ 산출근거자료-별첨4										
다. 신용도		10												
다.신용도	(1)입찰참가 제한, 영 업정지 (가)감리 업체 (나)참여 감리원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산출근거		(2) 참여감리원 :												

	(2)재정상태 건설도	[3]																			
	(가) 자본 비율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0.85</td> <td>0.70</td> <td>0.55</td> <td>0.4</td> </tr> </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유동 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0.8</td> </tr> </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 실적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이하</td> <td>5년초과 10년이하</td> <td>10년초과 20년이하</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r> <td>전력신기술</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3%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5</td> <td>3.0</td> <td>2.5</td> <td>2.0</td> </tr> </table>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p>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p> <p>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p>												
		<p>다. 교육실적</p> <p>-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점</p> <p>-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점</p>												
마. 업무중첩도		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6)	<p>○ 상주감리원(6점)</p> <p>-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책임감리원</td> <td>보조감리원</td> </tr> <tr> <td>점 수</td> <td>4</td> <td>2</td> </tr> </table> <p>※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p>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2) 비상주 감리원	(4)	<p>○ 비상주감리원(4점)</p> <p>-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p> <p>-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6개소미만</td> <td>6개소</td> <td>7개소</td> <td>8개소</td> <td>9개소이상</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td> <td>2</td> <td>1</td> <td>0</td> </tr> </table> <p>※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p>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p>가. 상주감리원 :</p> <p>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p>												
바. 교체빈도		5												
바. 교체 빈도	(1) 감리 업체	(2.5)	<p>○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교 체 빈 도 (%)</td> <td>10%미만</td> <td>10%이상 20%미만</td> <td>20%이상 30%미만</td> <td>30%이상</td> </tr> <tr> <td>점 수</td> <td>2.5</td> <td>2</td> <td>1.5</td> <td>0</td> </tr> </table>	교 체 빈 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교 체 빈 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 감리원	(2.5)	<p>○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p> <p>※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p>												
		<p>가. 감리업체 : = %</p> <p>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p>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d>0</td> </tr> </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2) 작업 기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d>0</td> </tr> </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업 기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소 계					
가점	(1) 지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임 감리원	(1)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	부실 벌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 부실벌점 :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여수시장 귀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 적 (최근 3년)	A ÷ 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p>※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p> <p>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p>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m ²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p>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p> <p>여수시장 귀하</p>					
<p>위 감리원은 현재 ()월간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시·도지사 <input type="checkbox"/></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책임 감리 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u>소계</u>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u>소계</u>				일 년		
합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보조 감리 원							
	합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비상 주 감리 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u>소계</u>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u>소계</u>				일 년		
합계				일 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번	용역명	감리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산 연면적 (㎡)	평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감리원 배치 계획 표

○ 용역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2018년												2019년												2020년						개월	비고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채임	○○○	특급																									21	예시						
보조	○○○	-																																
	○○○	-																																
비상주	○○○	-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업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	70	$7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55	82.95%
1,200세대 미만	50	50	$5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30 -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